개정안 주요 내용

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[시행규칙]		
1. 달걀의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	o 미표시: 경고 o 위변조: 경고	o 미표시*: 영업정지 15일(1차) *산란일, 고유번호 o 위변조: 영업소 폐쇄(1차)

□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1. 달걀 난각 표시사항 변경	달걀의 난각에 생산자명만 표시	달걀 난각에 다음 각 호를 표시하여야 함 ① 산란일자 ②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③ 사육환경번호
2.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		<table><tr><th>번호</th><th>사육환경</th><th>내용</th></tr><tr><td>1</td><td>유기농</td><td>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3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</td></tr><tr><td>2</td><td>방사사육</td><td>「동물보호법」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련 별표6의 자유방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</td></tr><tr><td>3</td><td>축사내 평사</td><td>「축산법」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,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. 다만,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</td></tr><tr><td>4</td><td>케이지 사육</td><td>「축산법」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,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</td></tr></table>